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동문회 규약

2022년 3월
2026년 5월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모교 체육교육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재직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 각종 체육대회, 모교 방문 행사, 기타 동문회 주관 행사 등
2. **장학 및 후생 복지 사업**: 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회원의 후생 복지 증진, 회원의 경사 및 조사 후원 등
3. **회원의 전문성 강화 및 예비 교사 교육 지원 사업**: 동문회원들의 실기 지도 역량, 스포츠 심판법 연수 운영, 예비 교사의 실기 지도 및 멘토링 등
4. **출판 사업**: 동창회 명부, 소식지 발간 등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①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자 중 회비를 납부한 자
②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포츠문화행정 전공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①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②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재학생
③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포츠문화행정 전공 재학생 및 수료생
④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전항(1, 2, 3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 3장 조직

제8조(조직)

1. 본회는 효율적 회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산하에 친목행사부, 장학복지부, 역량개발부, 홍보출판부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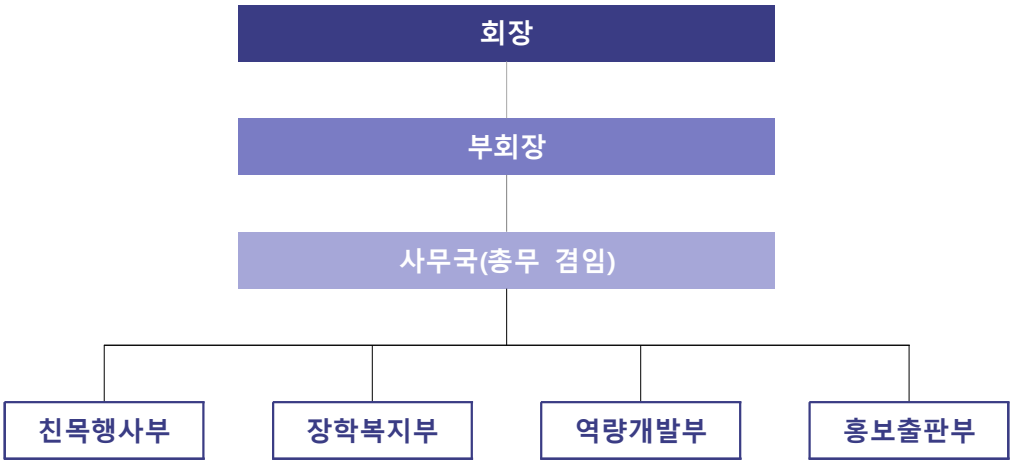

2. 사무국에는 국장을,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각 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친목행사부:**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에 관한 사항(각종 체육대회, 모교 방문 행사, 기타 동문회 주관 행사 등)

② **장학복지부**: 장학 및 후생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회원의 후생 복지 증진, 회원의 경사 및 조사 후원 등)

③ **역량개발부**: 회원의 전문성 강화 및 예비 교사 교육 지원 사업(동문회원들의 실기 지도 역량, 스포츠 심판법 연수 운영, 예비 교사의 실기 지도 및 멘토링 지원등)

④ **홍보출판부**: 출판 사업에 관한 사항(동창회 명부, 소식지 발간 등)

제4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정수와 임무)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1명):**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총무 겸임, 1명):**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관장 및 처리한다. 회원의 회비 징수 및 기타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4. **친목행사부장(1명)**: 해당 부서의 사업을 총괄한다.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5. **장학복지부장(1명)**: 해당 부서의 사업을 총괄한다.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6. **역량개발부장(1명)**: 해당 부서의 사업을 총괄한다.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7. **홍보출판부장(1명)**: 해당 부서의 사업을 총괄한다.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투표를 통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 재임)
2.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매년 정기 총회 시 회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본회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총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4.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1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요청하였을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이 각 회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위임의 경우 성원으로 인정하나 표결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정)

1. 본회의 운영비(회비)는 각 회원당 매월 10,000원을 적립하며, 정해진 기간 내 연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인 100,000원을 징수한다.
2. 행사 진행 등으로 인해 부족 시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회기 잔액은 전액 다음 회기로 이월하며 연말 환급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각 사업별 회칙

제17조(친목행사부 사업)

1. **친목회식**: 본회의 회기 중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전 회원의 친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회원들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비는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모교 방문 행사**: 본회에서는 연 1회 모교 방문 행사(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홈커밍데이라 칭함)를 정기적으로 기획·운영한다. 본 행사는 정기 행사이므로 회원 수의 30% 이상 참석 시 회비로 행사 비용을 지출한다.
3. **스승의 날 행사**: 본회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에 일정 금액을 찬조한다. 찬조 금액은 임원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기타 회원 간 친목 도모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5. 본 부서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행사비는 본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원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6. 졸업생 중 동문회 회원이 아닌 인원이 해당 행사에 참여할 경우, 임원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일정 금액의 기여금(참가비)을 징수한다.

제18조(장학복지부 사업)

1. 장학 사업

- 장학금 수여 대상자 선정: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장학 사업 규정을 따른다.
- 장학금 금액: 1년 2,000,000원으로 한다.

2. 회원의 경조사

①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상호 부조를 위해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조항	내용	해 당 자	금액	비고
축의금	결혼	본인	100,000원	100,000원 내외의 축하화환 전달
		자녀	100,000원	
조의 및 부의금	사망	본인(배우자 포함)	300,000원	100,000원 내외의 근조화환 전달 근조기 전달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200,000원	
		자녀	200,000원	
위로금	입원 (질병, 사고)	본인	100,000원	2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

② 동문회 대표 자격으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임원진)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도권: 2만원, 그 외 지역: 4만원).

3. 본 부서에서 주최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본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원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역량개발부 사업)

1. 동문회원 전문성 강화 연수: 본회는 동문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심판법, 최신 실기 지도법 등의 연수를 기획·운영한다

- 연수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동문을 우선적으로 초빙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연수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강사비, 시설 대관료, 소모품, 교안 제작비 등)은 동문회비로 사용하며, 강사료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구분	대상	지급 기준(시간당)	비고
특별 강사 (외부 초빙)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해당 분야 선수 출신인 자 동문회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	70,000원	임원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일반 강사	동문회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한 동문회원	50,000원	

2. **예비 교사(재학생) 실기 지도 및 멘토링:** 본회는 모교 재학생들의 교원 임용고사 합격률 향상을 위하여 실기 지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역량개발부장은 실기 종목별 지도 능력이 탁월한 동문을 '동문 멘토'로 위촉하여 재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시설 대관료 및 소정의 강사료는 본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체육교육과에서 강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강사료는 생략한다.
3. 본 부서에서 주최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본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원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 졸업생 중 동문회 회원이 아닌 인원이 해당 연수에 참여할 경우, 임원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일정 금액의 기여금(참가비)을 징수한다.

제20조(홍보출판부 사업)

1. **동문회원 명부 관리 및 발간:** 본회는 회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동창회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명부를 발간한다.
2. **동문회 소식지(회보) 발간:** 본회는 동문 소식 및 모교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한다.
   - 소식지는 인쇄물 또는 이메일,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소식지에는 회비 집행 현황 및 주요 사업 결과 보고를 포함할 수 있다.
3. 본 부서에서 주최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본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원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3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6년 5월 5일(화)부터 시행한다.